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8. 2. 21.(수) 09: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효성 위 원 장  
허 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

## 제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09시 3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8년 제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8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 <의결안건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하고, 나머지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3건은 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에서는 <의결안건 가>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고, 그 외 안건은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들어가기 전에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의결사항

### 나.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8-09-052)

○ 이효성 위원장

-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자 정책국, 방송기반국 및 기획조정관의 안건 순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자 정책국 소관인 <의결안건 나>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제안이유입니다. 「위치정보법」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같은 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조사배경입니다. 롯데정보통신(주)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법인 분할 절차를 완료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분할하고도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아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27일부터 금년 1월 5일까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사업자 의견접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심인 일반현황 및 위반사항 주요경과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위치정보법 위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정보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구(舊) 롯데정보통신(주)는 2017년 11월 2일 상법상 법인 분할 절차를 완료한 이후 신설 롯데정보통신(주)가 11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정보사업 분할인가를 신청하고 금년 1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분할을 신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법성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정보사업자를 분할하고자 하는 법인은 방송통신위원회 인가를 받기 전에 상법상 법인 분할 절차를 완료한 행위가 위치정보법 제7조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법인의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 후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분할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는 위치정보법 제10조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심인 의견입니다. 피심인 의견입니다. 법인 분할 인가의 경우, 법인 분할기일 '17년 11월 1일 전에 위치정보지원센터에 문의하고 분할등기 이후 바로 인가신청을 하는 등 위치정보사업 분할인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법인 분할 신고의 경우, 방송통신

위원회로부터 신고 지연을 지적받은 이후 즉시 신고를 준비하였던 점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안)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정보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항제1호에 따라 기준금액은 인가받지 않고 위치정보사업을 분할한 행위는 600만원을 적용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분할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38조 [별표 5]에 따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감경사항입니다. 인가위반의 경우, 상법상 법인의 분할 절차를 완료하였으나 곧이어 분할인가 신청을 하는 등 법률상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감경하고, 신고위반 행위의 경우,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인 위치정보사업 인가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감경하고자 합니다. 최종 과태료 부과(안)입니다. 롯데정보통신(주)에 대해 위치정보사업 분할인가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분할 신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총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롯데정보통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롯데그룹 내 자회사입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종업원 수가 2,000명이 넘고 매출액도 500억원이 넘는 이런 대형회사에서 우리 인가도 받기 전에 분할할 때 등기를 먼저 하고, 이런 법적인 절차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경위를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 준수 의지가 없는 것인지, 무지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런 정도 위반은 대충 넘어가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서 한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조사해 보셨으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가 문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인가 심사를 허가 심사와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심사기간이 매번 상시적으로 열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롯데정보통신이 원하는 기간에 맞춰서 저희 인가를 받기가 어려워서 아마 바로 인가받기 전에 분할등기를 한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피심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얼핏 보고서에 보니까 이사회 의결 전에 먼저 기정 사실화해서 분할하겠다고 신고를 하는 것이 이사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냐는 인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절차를 마친 뒤에 신고를 했다, 이런 투로 피심인이 의견을 진술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와 또 회사 내부적으로 영업상 회사 경영 의사결정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날짜를 미리 인가를 받고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걸려들면 늘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은 사업자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 보니까 신고기한이 아직 명시가 안 되어 있지요?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현재 법상 신고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우리가 신고기한도 명시하도록 제도개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어쨌든 이사회 의결도 거쳐야 하는 그런 내부 절차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사업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자꾸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점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피심인 롯데통신은 조금 전에 김석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치정보법에 의한 규제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준수할 여력이 충분히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위반했는데 피심인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도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로부터 신고 지연에 관련된 지적을 받은 후에야 신고 준비에 들어가는 등 대기업 역시 위치정보에 관련된 개인위치정보보호 규제를 준수하는 의식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여 안타깝습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기업들이 자신의 주총 일정이나 내부 의사결정을 먼저 중시하고 과태료가 적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따라서 대기업인 피심인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치행정의 원칙인 비례의 원칙에 의거해서 시정조치(안)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원안대로….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한 12개사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8-09-053~064)**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한 12개사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 등을 위반한 12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제4항, 제76조제1항 등에 의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조사배경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및 이용자 민원 신고가 접수된 통신 영업점 등 총 1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 하였습니다. 총 12개 사업자는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작년 7월 10일 검거한 해킹 피의자를 조사 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파악하고 우리 위원회에 통보한 (주)누리미디어 등 4개사업자, 해킹에 의해 회원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신고한 레츠코유케이 등 2개 사업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미파기, 불법 TM 등의 사유로 이용자가 민원신고한 통신사 영업점 6개사 등 총 12개 사업자를 조사하였습니다. 주요경과입니다. 작년 7월 10일 부터 9월 20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작년 12월 22일부터 금년 1월 18일까지 시정조치 (안) 사전통지 및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피심인 일반현황 12개사에 대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6개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경로 및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젯뷰티 등 4개 사업자의 유출경로 및 유출내역입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검거한 유진투자선물을 해킹한 피의자로부터 입수한 PC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통해서 약 20여개 업체의 개인정보 유출사실이 확인되었고, 방통위 소관 4개 사업자에 대해서 방통위에 통보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유출경로를 조사했지만 로그 기록 등은 확인하지 못하여 정확한 유출시기나 경로는 확인 불가였습니다. 다만, 2011년 또는 '15년 이전에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출건수는 (주)젯뷰티는 약 102,000여건, (주) 누리미디어는 304,000여건, (주)슈어넷은 4,381건, (주)카스파는 134,000여건 등이 되겠습니다. 레츠코 유케이, 유학정보를 제공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불상의 해커가 악성코드가 포함된 상담 메일을 보내서 직원PC를 감염시키는 스피어피싱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유출시기는 작년 6월이 되겠습니다. 3,355건의 이름, ID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주)바캉스네트워크는 여행사 쇼핑몰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직원PC가 감염되고, 관리자 계정이 탈취되어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출시기는 작년 7월이 되겠습니다. 약 11,900여건의 이름, 전화번호, 여권 사본 등 일부가 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2개 사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갯뷰티는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내역 5년간 미보관, 취급자 외부접속 시 2차 인증 미적용,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 미설치·미운영 등 3개 항목의 접근 통제 관련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여 법 제2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접속기록을 6개월 보관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보관하지 않아서 법 제2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였습니다. (주)국가대표텔레콤은 개인정보를 암호화 저장하지 않아 법 제28조제1항제4호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이용자 가입신청 서류 미파기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미파기로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였습니다. (주)누리미디어는 취급자 접속 시 2차 인증 미적용, 침입탐지시스템 미설치·미운영 등 3개 항목의 접근 통제 보호장치를 위반하여 제2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고, 접속기록 6개월 미보관으로 법 제2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였습니다. 레츠고유케이이는 접근통제 위반 2개 항목을 위반하여 법 제28조제1항제2호 접속기록 6개월 미보관으로 법 제2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였습니다. (주)바캉스네트워크는 취급자 외부 접속 시 2차 인증 미적용,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 미설치·미운영 등 2개 항목의 접근통제 보호장치를 소홀히 하여 제28조제1항제2호를, 접속기록 6개월 미보관으로 제28조제1항제3호를, 전송구간을 암호화하지 아니하여 제28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였습니다. (주)부경정보통신과 소영컴퍼니는 모두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계좌번호 암호화 저장, 신청서류 미파기 등을 위반하여 법 제23조의2제1항, 제28조제1항제4호, 제29조제1항제1호를 각각 위반하였습니다. (주)슈어넷은 내부관리계획을 미수립하고, 퇴직자 접근권한 미말소,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 미설치·미운영 등 4개 항목의 접근통제 보호장치를 위반하고, 접속기록 6개월 미보관, 그다음에 비밀번호를 양방향으로 암호화하고, 개인정보 전송구간을 미암호화하고, 계좌번호를 미암호화 저장하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를 각각 위반하였습니다. (주)씨비티코리아는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접근통제 관련해서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접속기록 6개월 미보관, 비밀번호 양방향 암호화 등으로 제2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를 각각 위반하였습니다. (주)유주컴퍼니는 취급자 외부 접속 시 2차 인증 미적용,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 미설치·미운영 등 2개 항목의 접근통제 관련 사항, 계좌번호 암호화하지 않은 사항으로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위반하였습니다. (주)카스파는 개인정보 접근통제 관련해서 퇴직자 접근권한 미말소,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내역 미보관 등 4개 항목의 접근통제 항목을 위반하고 접속기록 6개월 미보관, 그다음에 유효기간제 위반으로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휴스텔레콤은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계좌번호 암호화 저장, 신청서류 미파기 등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 제23조의2제1항,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였습니다. 피심인 제출의견입니다. (주)갯뷰티 등 9개사는 현장조사 이후 개선조치 완료 및 선처를 요망하고, 레츠고유케이, (주)바캉스네트워크, 소영컴퍼니 등 3개사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시정조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갯뷰티 등 12개 사업자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하고자 합니다. 위반행위 즉시 중지,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제출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입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을 위반한 (주)부경정보통신, 소영컴퍼니, 휴스텔레콤 등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준금액 1,000만원 중 소기업에 해당되어 각 50%인 500만원을 감경하고자 합니다. 각각 500만원씩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위반과 관련해서 (주)갯뷰티 등 12개 사업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갯뷰티 등 6개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 분실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약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과 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병과가 가능하나 (주)갯뷰티, (주)누리미디어, (주)슈어넷, (주)카스파 등 4개사는 유출시점이 수년 경과하여 유출원인 및 이용자 피해사항 등이 명확하지 않고, (주)바캉스네트워크, 레츠고유케이 등 2개사는 관련 매출액 등 기업규모가 5인 이하인 소상공인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처분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과태료는 기준금액 1,000만원을 적용하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레츠고유케이 등 8개사에 대해서는 기준금액 50%인 500만원을 가중하고, 사업규모가 소기업이고 위반행위가 1개인 (주)국가대표텔레콤 등 4개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감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50% 감경 및 가중사항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종과태료입니다. 레츠고유케이 등 8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각 1,500만원을, (주)국가대표텔레콤 등 4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각 5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 미파기와 관련해서 (주)카스파에 대해 기준금액 1,000만원을 적용하고 특별히 가중할 사유는 없고, 사업규모가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감경하여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안)입니다. 12개 사업자에 대해서 총 1억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세부 과태료 부과내역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벌칙입니다.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미파기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64조제4항에 의한 시정명령뿐만 아니라 제73조제1의2호에 의한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 당시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일 혹은 신청서류 등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 (주)국가대표텔레콤, (주)부경정보통신, 소영컴퍼니, 휴스텔레콤 등 이상 4개사는 위반행위가 최초 적발된 점, 그다음에 해당 사업자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시정명령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3월 중 시정조치사항을 통보하고 상반기 중 시정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오늘 안전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본 사항은 조사경위입니다. 사업자의 유출신고나 아니면 이용자 민원신고에 의한 조사는 사업자나 이용자가 개인정보 무단 유출에 대해서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검거된 해킹 피의자로부터 입수한 PC의 저장파일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이 파악된 4개 사업자의 경우는 로그기록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지요. 또한 유출시기가 유출경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해킹 피의자를 검거하지 않았다면 유출사실 자체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반사항만 보더라도 4개 사업자 모두 취급자의 외부 접속 시 2차 인증 미적용,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 미설치·미운영이 확인된 것으로 볼 때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사업자가 아니었는가 여겨집니다. 따라서 시정조치(안)에서 제기된 것처럼 이들 업체의 재발방지대책

수립이나 이행결과 점검에 특히 유의해서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주)갯뷰티는 CJ 계열 MPP의 한 회사에 나오는 프로그램 이름과 똑같습니다. 아마 그쪽 회사와 관련 있는 것 같은데 말하자면 CJ 계열의 손자회사쯤 되는 회사입니까?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CJ에 있는 프로그램은 갯뷰티이고, 아마 그것을 차용해서 친근하게 보이려고 업체명을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CJ와 관련 없는 온라인 쇼핑몰업체입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번번이 걸려듭니다. 걱정인데 누리미디어를 보면 논문 검색 업체라고 했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많이 이용하고 또 종업원 수도 62명이나 되고 매출액도 100억원이 넘습니다. 유출건수도 보면 30만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유출내역을 보니까 고객의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또 이메일까지 다 유출이 됐습니다. 모든 것을 다 털어갔다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이렇게 큰 회사가 다른 데는 종업원이 4명, 5명, 10명 미만이거나 그 정도인데 여기는 꽤 규모가 큰 회사인데도 보안이 이렇게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돈을 벌어서 우리 고객들이 안심하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는 의문이 듭니다. 대부분의 위반사항을 보면 누리미디어뿐만 아니라 전부 개인정보 보호조치 접근통제, 접속기록 미보관, 암호화 이행하지 않았다, 다 이런 것입니다. 다 기초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수칙들인데 여기에 대한 보안 의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리미디어가 1,500만원 정도 과태료만 패널티를 부과한다면 이것이 시장에 그런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과태료를 올릴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경고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을 어겼는데...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유출경로나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했으면 과징금 부과사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 시점이 많이 경과되어 있고 검거된 해커의 PC에 보관되어 있던 사항이라서 자세한 경로를 파악하지 못해서 과태료 부과에 그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금년에 과징금 사항은 상향하는 것으로 과제에 넣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추가로 과태료에 대해서도 저희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하고 위반행위별로 차등해서 기준 금액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연구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누리미디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해킹된 업체들이 접속기록을 당시에도 보관하지 않았고 지금도 보관하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침입차단 탐지시스템이 안 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해킹이 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사후 분석이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접속기록을 미보관한 것에 대해서는 기준을 높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인지한 사실도 경찰로부터 우리가 통보를 받은 것 아닙니까?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해커가 검거되어서 쪽 뒤져 보니까 이런 피해사실이 나타난 것입니다. 본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피해 받은 사실도 모릅니다. 기록도 없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면 누가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가입을 해서 개인정보를 업체에 자기 패스워드를 맡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너무나 허술한 보안의식을 강화시킬 방안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교육도 꾸준히 시키고 있고, 저도 그 교육현장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것 정말 숙제입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이런 보안솔루션을 다 갖추도록 돈이 들더라도 해야 합니다. 대부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이것을 하지 않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함을 깨닫고 이것을 어떻게든 보안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보고를 보니까 제가 섬뜩함을 느끼는데 벌칙조항을 보니까 국가대표텔레콤 등 4개사가 통신사 영업점이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대개 스마트폰을 2년마다 바꿀 텐데 바꿀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핸드폰을 바꾸면서 그 안에 있는 내 기록의 모든 것을 옮기지 않습니까? 옮길 때 내 자료가 그대로 영업점 컴퓨터에 남지 않나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실입니다. 개통을 위한 영업점이 개인기록을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걸린 것이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것 굉장히 불안한 것입니다. 정말 온 국민이 이런 것을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안에 사진도 있고 개인파일이 많을 텐데 왜 지우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통사의 본점에서 이것을 다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기변할 때 모든 기록들이 본사로 기록이 올라갔다가 싹 내려 받기 하고는 지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파일이 다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 영업점에서 그것이 지워지지 않고 보관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위원님, 기변할 때 과정에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장하지 않는 것은 확인을 했고, 신청서류를 종이로 파쇄하지 않고 보관했거나 아니면 신청서류상에 있는 개인정보들을 엑셀파일로 관리해서 주로 연락처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변할 때는 아닙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다행입니다. 어쨌든 신청서류에 들어가 있는 개인정보가 파기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파기되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통신사 영업점에서 사전에 기획점검을 해서 경각심을 쫓고, 올해도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활용하고 이용하는 점에 대해서는 기획점검을 두 달이든 세 달이든 여력이 되는 대로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통신사 본사에서 통신사 영업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에 대해 강화하도록 교육도 촉구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을 꼭 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리고 2016년부터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신분증 스캐너가 보급이 되어서 90% 이상의 경우에는 통신사 영업점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남지 않고 바로 본사 전산 시스템에 저장되도록 제도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되어 있고 상당 부분 개선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주민등록번호에 관심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인정보입니다. 4페이지 개인정보 유출경로 및 유출내역을 보면 카스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등록번호는 몇 명 정도가 유출된 것입니까? 14만건 중에서 전체입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이것이 전체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카스파가 망법 제23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할 수 있는 업체입니까?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그렇지 않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법을 위반한 것이지요?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뒤에 보면 부경정보통신, 소영컴퍼니, 휴스텔레콤 같은 경우는 주민번호 사용 제한입니다. 이것은 최근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수집해 놓은 주민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카스파 같은 경우 해커가 가지고 있던 파일에는 주민번호가 있었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할 때는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것은 현장조사에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휴스텔레콤이나 다른 이통사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스캔 뜯 화면이나 주민번호 그런 것들에 대한 파일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를 발견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고 3개 업체는 유출되지 않았지요?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주민번호 수집이나 이용은 아주 엄격하게 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 업체들 같은 경우 주민번호를 포함해서 사용할 수 없는 개인정보는 파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언제든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번호를 보관해서는 안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파기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언론보도가 된 적이 있지만 바캉스네트워크의 경우 여권사본 일부가 유출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권사본 일부가 나갔다는 것입니까? 어떤 정보가 나간 것이지요?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여권사본을 스캔 뜯 내용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일부라니까, 여러 사람의 사본이 있는데 그중 일부가 나갔다는 것입니까? 여권사본이라고 하면 앞에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는 그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권사본 일부라는 표현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여권번호가 있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여권에는 생년월일과 밑에 보면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과연 그런 정보까지 다 필요하냐, 여권에 담을 필요가 있느냐는 논의가 있었고, 여권사본 같은 경우 사실상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상당히 엄격하게 보호가 되어야 하는데 흔히 여행사들, 특히 중소, 아주 작은 여행사들이 여권사본을 많이 취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획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권사본은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여행사들이 여권사본을 많이 수집도 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여권사본 수집하는 것은 금지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 안에 주민번호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과장님, 모르십니까? 여권을 보면...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보통은 저희가 수집해서 파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인 것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들 관행이 조금….

○ **고삼석 상임위원**

- 다른 정보보다는 이름이나 ID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보다는 여권사본 같은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여권사본을 주로 수집하는 중소 여행사들, 요즘 인터넷여행사들이 아주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대단히 취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획해서 점검해 주시라는 취지입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방통위 소관인데 혹시 스캔해서 사본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조해서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여러 안건들을 다루면서 보면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크게 미흡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많은 언론인들이 회의장에서 방청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 기준을 다 높여서 처벌을 확실하게 더 강화하겠다는 것을 별도로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한 가지 궁금한데 유주컴퍼니 통신사 영업점인데 종업원수 10명이고 매출액이 250억원입니다. 1인당 25억원씩인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영업점에서 이동전화 판매 매출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아무리 영업점이라 하더라도 10명 고용해서 250억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까?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부가세 신고된 것을 확인했는데 이렇게 신고는 되어 있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인원수에 비해서 영업점 매출액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사고가 난 후에

차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사전에 교육과 계도 등을 통해서, 말하자면 감독을 통해서 예방하는 것도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석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고 김재영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시 점검을 통해 항상 이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교육을 통해 이 사람들이 정보보호 의식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계도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보고사항

###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 ○ 이효성 위원장

- 이어서 <보고안건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민간아이핀 기관이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이핀을 발급할 때 신원확인 등을 위해 주민등록자료의 확인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화우편, 전화 등으로 한정 열거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획득 방법을 포괄적 네거티브 체계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9조의7을 신설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자료 확인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신원확인 및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의 확인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따라서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법정대리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던 공공아이핀 서비스를 최근 민간 아이핀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공아이핀에서 수행하던 만 14세 미만 아동의 본인확인기능을 민간아이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안 제12조를 개정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 획득 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인터넷 사이트, 전자우편, 전화, 우편 등으로 동의 획득 방법을 정하고 있지만 문자 메시지, 모바일 앱, SNS 등 새로운 동의 획득 방법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규제 형식토론회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선 과제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제5호를 신설해서 포괄적으로 동의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안)입니다.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3월부터 4일까지 실시하고자 합니다. 동의 획득 방법 관련 시행령 제12조 개정안은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법제처에서 주도하여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월까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3페이지에 보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획득방법 확대가 있지 않습니까? SNS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다른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SNS에서도 여러 가지 개인정보 수집이 많기 때문에 SNS에서 어떤 창을 띄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예시로 열거한 것입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지금까지는 저희 시행령에서 동의했던 것을 4가지 명시했는데 제5호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새로운 동의 획득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남겨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대체로 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자 메시지도 휴대폰이 확인되면 통상 문자메시지를 통해 인증번호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모바일 앱은 본인이 깔고 본인의 기기와 정보 일치 여부 이런 것들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SNS 같은 경우에는 계정 도용이나 해킹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에 비해 안전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참고로 예를 들자면 SNS에서 안에 메뉴가 있어서 거기에서 동의를 클릭할 수 있는 메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온 방법은 본문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예시로 열거한 것이고 실제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하는 방법으로 해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동의방법을 제한하지 않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알겠는데 문제는 수준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단순히 예시를 하지 마시고 SNS는 다른 문자 메시지나 모바일 앱이나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전자우편이나 이것들과 분명히 보안 수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단의 이용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민간아이핀 3사가 주민등록 자료확인을 요청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설하는 것이 앞부분이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뒤 파트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개혁의 틀이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나 여겨지는 것인데, 고삼석 위원님 좀 전에 이야기해 주셨지만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들을 다 열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좀 전에 우리가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한정 열거했던 것에 비해 확 열어놓은 개념들이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이것이 신산업이나 신기술 등에 대해 사전에 허용하고 사후 규제방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 개정이 없어도 혁신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가 용이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고삼석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사후에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 강한 규제대책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4기 정책과제 발표 시 우리 위원회도 방송광고의 규제체계를 단순화하고 기본적 규제 외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광고 규제를 도입·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 전체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안이 가능한 것이 있는지 다른 부분도 찾아볼 수 있는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의견 있으십니까? 방금 허 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정부의 방침이 그렇고 또 우리 위원회도 가급적이면 가용한 모든 부분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서 사전에 허용하고 사후에 문제가 됐을 때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 하도록 하시고 그런 점에서 이 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허 욱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네거티브 규제를 많이 적용할 수 있게 면밀히 규제업무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말씀하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전체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광고 부분은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다 위법한 것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의견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보고안건 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당하게 판매점, 대리점 및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USIM의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금년 1월 30일 국회를 통과하고 오늘 관보에 게재·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및 관련 하위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신설된 금지행위 조항인 법 제9조제5항을 위반행위 신고사항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제6조제2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설된 금지행위 조항인 법 제9조제5항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별칙 규정이 적용되는 법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3항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00분의 2로 규정하는 [별표 2] 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동일하게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2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고시)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긴급중지명령 발동 기준을 개정안 제2조제7호를 이번에 개정된 법 제9조제5항과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안)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5월 21일까지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궁금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만 여쭙보겠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을 개정하면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2로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실질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액수가 어떻게 됩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지금 단말기유통법에서는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법 제3조제1항, 그다음에 제9조제3항 이통사가 대리점에게 부당한 차별 지원금 지급 관련 지시, 강요, 유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100분의 2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과징금 부분의 최고 상한이 100분의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 상한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100분의 3으로 올린다는 것이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아닙니다. 법에서는 100분의 3으로 되어 있고 시행령에서는 100분의 2로 되어 있는데 100분의 2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100분의 2로 맞춘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4페이지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 중 제1항부터 제6항은 그대로 가고, 제7항을 신설하는데 여기에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가 현저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저한’ 경우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데 어떤 것입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가 항상 법을 하게 되면 부당하다, 이용자 차별이 있습니다. 이용자 차별이 있지만 그것이 부당해야 하고, 그다음에 부당하더라도 아주 심대하게 위반행위가 커야 된다는 현저성이 있습니다. 부당성과 현저성을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는 사항이 되는데 아주 사소한 과실이나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긴급중지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런 USIM의 부당한

유통 강요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전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즉시 위원회 서면 의결을 거쳐 긴급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저성과 부당성 문제는 위원회에서 재량으로 일정 기준 하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6-1. 의결사항

### 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2018-09-065~068)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방송기반국 소관인 <의결안건 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소유제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동철 방송기반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제4항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미디어렐사의 주주인 (주)클라운해태홀딩스, 일동홀딩스(주), (주)사랑방미디어, (주)한진칼에게 미디어렐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미디어렐사의 주식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미디어렐사 주식 소유 법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경과입니다. ’17년 6월 미디어렐사 영업보고서 검증 시 일부 주주의 소유제한 위반사실을 확인했습니다. 8월에 5개 미디어렐사로 확대해서 주주현황을 일제 조사했고, 9월부터 10월까지는 범위를 특수관계자까지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1월에는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해당 사업자들에게 보내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법률자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미디어렐사 소유제한 관련 규정입니다. 미디어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대기업·일간신문·뉴스통신사 이 3개사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도 마찬가지로 포함됩니다. 미디어렐사 주식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광고대행사·광고판매대행사 역시 특수관계자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주회사는 미디어렐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렐사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지분을 소유한 자는 동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처분이 가능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반사항입니다. 5개 미디어렐사 중에서 3개사의 4개 주주가

미디어랩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위반사업자 및 위반 주주를 보면 (주)티브이조선미디어랩에서 (주)크라운해태홀딩스, 일동홀딩스(주) 2개가 위반을 했고, (주)미디어랩에이의 경우에는 (주)사랑방미디어라는 주주가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주)엠비엔미디어랩에서는 (주)한진칼이 위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미디어랩사 소유제한 규정 위반현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주)티브이조선미디어랩의 경우 (주)크라운해태홀딩스는 지주회사의 지분소유 금지규정을 '17년 3월 2일부터 위반했습니다. 다만, '17년 3월 2일 지주회사 전환에 따라서 이전에 '크라운제과' 주식이 '홀딩스'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일동홀딩스(주)의 경우 지주회사의 지분소유 금지규정을 위반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7년 3월 31일 지주회사로 주주가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일동제약' 주식이 '일동홀딩스'로 변경됨에 따라서 규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동홀딩스의 특수관계자인 유니기획이 광고대행자에 해당되어 일동홀딩스가 광고대행자 지분소유 금지규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미디어랩에이 관련사항입니다. (주)사랑방미디어라는 주주가 있습니다. 여기의 특수관계자인 (주)에스알비무등일보가 일간신문에 해당되어 (주)사랑방미디어가 일간신문 지분소유 제한 규정 10% 초과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사랑방미디어의 특수관계자인 (주)에스알비에드가 광고대행자에 해당되어 (주)사랑방미디어가 광고대행자 지분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엠비엔미디어랩의 경우 주주식 중 (주)한진칼이 자산총액 10조 이상 기업집단 지분소유 제한 규정이 10% 초과하면 안 되는데 이것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주회사의 지분소유 금지규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반사항 중에서 4개 주주 중 (주)티브이조선미디어랩의 주주인 일동홀딩스(주), (주)엠비엔미디어랩의 주주인 (주)한진칼은 최초 허가시점인 '14년부터 주식 소유 제한규정을 위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미디어랩사의 주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황을 보면 3개 미디어랩사의 주주 4개사 (주)크라운해태홀딩스, 일동홀딩스(주), (주)사랑방미디어, (주)한진칼은 미디어랩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였고, 이들 4개사 모두 위반 사실을 위반하였습니다. 피심인 의견입니다. (주)티브이조선미디어랩의 주주 (주)크라운해태홀딩스와 (주)엠비엔미디어랩의 주주인 (주)한진칼은 주식 전부를 처분할 계획이고 주식 처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미디어랩법 제13조제6항에 의거 6개월 이내에 소유제한 위반 상태를 해소하도록 시정명령을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주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3개 미디어랩사 (주)티브이조선미디어랩·(주)미디어랩에이·(주)엠비엔미디어랩에 대해서는 상기 주주의 미디어랩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부과 및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제한 사실을 통보하고, 향후 소유제한 규정 준수를 위한 주주 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미디어랩사 자체 관련 검토내용입니다. 현황을 보면 (주)티브이조선미디어랩과 (주)엠비엔미디어랩은 '14년도 허가신청 시 사업계획서, 주주 구성내역, 서약서 등 관련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하여 미디어랩사 허가를 받았으나, 주주현황 조사 결과, 최초 허가 받을 당시부터 일부 주주의 소유제한 규정 위반사실이 있었으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위의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미디어랩법 제11조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허가 당시 위반사항 소유제한 등 결격사유 관련해서 위반사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취소 등의 처분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고, 허가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거짓이나 부정 등 고의성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증거와 이에 대한 행정청의 입증의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티브이조선미디어랩·(주)엠비엔미디어랩은 허가신청 당시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허가신청 시 제출한 허가신청법인명세서, 자본금 납입 관련 자료 등 허가관련 자료를 살펴 보았으나,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누락하려 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랩사가 정해진 양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점, 해당 미디어랩사가 위반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인정할 만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대법원 판례 및 법률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둘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만약에 받았더라도 최초 허가기간이 지금 지난 상태인데 그래도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허가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도 참고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허가 당시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만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행위로 취득한 허가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면 허가 당시의 위반사항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첫 번째나 두 번째에서 부정적으로 검토가 됐더라도 서약서를 근거로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했습니다. 현황을 보면 (주)티브이조선미디어랩·(주)엠비엔 미디어랩은 허가 신청시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서약사항을 위반하였음이 밝혀질 경우에는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다” 이런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최초 허가유효기간 만료 후 허가취소 가능 여부를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의 서약서를 근거로 허가신청 당시 소유제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방통위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행정처분은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서약서 내용을 근거로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미디어랩법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적 효력이 부족한 서약서만을 근거로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상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처리방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처리방안은 주식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3개 미디어랩사 4개 주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처분을 하고,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허가신청 시점부터 주주의 소유제한 규정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2개 미디어랩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주주관리를 통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경고 조치하는 것이 옳다고 봤습니다. 다음 3개 미디어랩사의 4개 주주 관련사항입니다. 미디어랩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주)티브이조선미디어랩의 주주인 (주)클라운해태홀딩스와 일동홀딩스(주), (주)미디어랩에이의 주주인 (주)사랑방미디어, (주)엠비엔미디어랩의 주주인 (주)한진칼에 대해, 미디어랩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소유제한 위반상태를 해소”하도록 시정명령을 처분하고, 또한 (주)티브이 조선미디어랩, (주)미디어랩에이, (주)엠비엔미디어랩에 대해 상기 주주의 미디어랩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부과한 사실, 그리고 미디어랩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위반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사실 등을 통보하고, 향후 소유제한 규정 준수를 위한 주주 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개 미디어랩사에 대해서는 (주)티브이조선미디어랩과 (주)엠비엔미디어랩에 대해 향후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고” 조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2월 말까지 주식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한 주주 4개사에 대한 시정명령 통지 및 미디어랩사에 대한 경고 조치를 통보하고 금년 8월 중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심의의결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피심인 제출 의견, 마지막으로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것이 우리가 판단할 때 고의적으로 숨겼느냐, 또는 거짓으로 허가를 받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판단을 보면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누락하려 했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봐서라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또 이미 허가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다시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판단이 옳았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시정명령상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데 미디어랩법 제13조제6항에는 시한이 6개월 이내라고 못 박아 놓았습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6개월 내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처분해야 할 주식이 티브이조선 같은 경우 5.5% 정도, 엠비엔미디어랩은 약 14%, 채널에이 쪽은 20%가 넘습니다. 6개월 이내에 과연 원활하게 매각 처분이 될 수 있겠느냐, 시장 상황이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저희가 11월에 시정명령안에 대해 미리 해당사들에게 통지했습니다. 의견을 접수했는데 11월 기준으로 6개월은 조금 촉박하다는 의견이 2개사에서 들어왔었습니다. 티브이조선미디어랩의 주주인 크라운해태홀딩스와 엠비엔미디어랩의 주주인 한진칼이 시간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처분시점이 11월 기준으로 조금 더 달라는 것이었는데 2월에 처분하는 것이라 충분히 그것이 감안됐고 본인들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다행이고, 채널에이 같은 경우 20%가 넘는 지분을 6개월 이내에 가액의 10억원 이상 되리라고 전망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6개월 이내 결국은 주식처분이 어려우면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시정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미디어랩법 제4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우리 쪽도 미리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디어랩 허가 낼 때 아마 다른 종편과 미디어랩과는 허가 신청양식이 다른 모양이지요?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저희가 미디어랩사 허가를 내줄 때 지상파 재허가와 양식이 달랐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을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는 다른 관점에서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언급하겠습니다. 김석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티브이조선미디어랩과 미디어랩에이는 위반된 지분을 전량 처분해야 하고, 엠비엔미디어랩의 한진칼은 10% 초과 금지 부분만 처분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14% 다 뺄 필요는 없고, 그렇지요?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다 처분해야 합니다. 두 사항이 걸립니다. 한진칼은 10조 이상의...

○ **고삼석 상임위원**

- 물론 6개월이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사전검토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견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시정명령 기간을 다르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분해야 할 지분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법 위반사항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시정명령기간을 준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분을 해야 하는 지분의 규모에 따라서 시정명령 기간은 차등을 둘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률해석을 받고 제가 관심 있는 것 중 하나가 서약서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서약서에 대해서 4개 법률 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서약서만을 근거로 어떤 행정처분을 하기는 우리가 따르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모든 신규 허가나 승인·재허가·재승인 때 다 서약서를 받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중에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서약서를 잘 이행하지 않으면 정성 평가에는 반영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건을 통해서 서약서만으로는 그 것을 위반했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전체 사업자들이 심사를 받을 때 서약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약서 제도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서약서를 상징적인 문건으로 해야 할지 이 부분도 단순히 국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처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법적 효력이 있도록 하시든지요.

○ 김재철 방송광고정책과장

- 서약서 내용을 서약서에만 남길 것이 아니라 조건으로 부과를 해야만 앞 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처장님께서 한번 사무처 차원에서 검토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조경식 사무처장

-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저는 원론적인 내용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디어렐법은 방송사가 직접 광고 영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방송에 대한 광고주 영향력을 줄이고 또한 과도한 방송의 상업화를 막자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당은 물론 광고주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디어렐의 주주 소유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이러한 소유제한 규정의 취지에 따라 엄정한 준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3개 미디어렐사 4개 주주사가 미디어렐법 위반상태를 법적 기한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1. 보고사항

### 다. 스마트 수어방송 상용화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이어서 공개안건 마지막 순서로 <보고안건 다> ‘스마트 수어방송 상용화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동철 방송기반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수어방송에 대해 청각장애인은 화면이 작다고 하고, 일반인은 방송영상을 가린다는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양측의 불편을 모두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해서 저희가 수어영상의 크기나 위치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시범방송을 거쳐 상용화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수어방송의 서비스 방식은 수어영상을 방송영상과 분리하여 인터넷으로 별도로 전송하고, 가정에 있는 수신기에서 합성하는 방식으로 수신기 조정 기능을 통해 수어화면의 크기를 조정하고, 방송화면과 수어화면의 상호 간 겹침 현상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현행 수어방송 대비 개선점입니다. 방송화면에 고정된 형태로 제공되며, 시청자에 맞춰 수어영상의 크기 조절이 불가능한 것이 현행 수어방송의 현황입니다. 이에 비해서 스마트 수어방송은 수어영상의 크기나 위치, 그리고 썬치와 썬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수어영상을 크게 시청하거나 폐쇄자막, 수어영상, 방송영상이 서로 가려짐 없이 시청할 수 있어서 방송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수어영상이 안 보이게 함으로써 화면을 가리는 불편함을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의 경우에는 일반인의 민원이 해소됨에 따라 주시청시간대에 수어방송을 편성하는 것이 용이해지는 장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외사례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BBC·ITV 등 화면고정 수어영상을 국내에 대비해서 3배나 4배 크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2016년 미국 대선토론 시에 후보자별로 전담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데 '16년 미국 대선이라는 특수한 시기에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위성으로 수어·자막 영상을 별도로 전송하고, 수신기에서 지상파 방송 영상과 수어영상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지상파방송과 위성통신을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기관인 “CS장애인방송 통일기구”에서 제공하고 있고, 수어영상의 크기나 위치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신기와 수신료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수신기는 48,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48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수신료는 500엔, 한 달에 약 5,000원 정도를 자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14년에 기술을 개발해서 '15년도에 TTA 표준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4년에서 '15년 실험방송을 거쳐서 '16년부터 '17년까지 시범방송을 실시했습니다. 참여 방송사업자는 방송채널사업자의 경우 KBS·JTBC·YTN·TV조선의 4개사가 참여하였고, 플랫폼은 CJ헬로·스카이라이프·SK브로드밴드 3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전국 청각장애인 300가구와 전국의 18개 수어통역센터를 대상으로 시범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 상용화 추진 계획입니다. 상용 서비스(안)입니다. 개시 시점은 '19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고, 가급적 1월부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사업자는 6개 채널 및 3개 플랫폼으로 채널의 경우 KBS, JTBC, TV조선, YTN 4개사에 내년 상용화 시점에 지상파 2개사를 추가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플랫폼은 CJ헬로, SKB, 스카이라이프 3개사가 되겠습니다. 이용자는 전국 수어사용자 9만명 중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방송에 가입한 가입자 3만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서비스 이용방법입니다.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가입한 사람들은 수신기만 교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플랫폼에 가입한 가입자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회사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시청자들은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방송 플랫폼에 가입을 하고 수신기를 받아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사업자 확대 방안입니다. 채널사업자의 경우 장애인방송 필수지정사업자인 중앙지상파, 종합편성·보도채널은 2020년까지 상용화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EBS, MBN 등 5개 채널이 추가되어 총 11개 채널로 확대되는 안입니다. 그리고 플랫폼의 경우 전국 및 비교적 넓은 지역에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2020년까지 상용화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티브로드, KT 등 6개 플랫폼이 추가되어 총 9개 플랫폼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용화 추진협의체 관련 사항입니다. 상용화 추진협의체는 금년 2월부터 구성해서  
 '19년 상용화 시점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방송사업자, 제조사, 장애인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논의할 의제는 방송사업자 대상 단계별 서비스 적용  
 범위 및 확산 방안 그리고 저소득층 가입자 등 이용자 확대 방안, 제공사업자의 범위, 편성  
 비율, 기술표준 등 장애인방송 고시 개정안, 각종 평가 시 가점 및 인센티브 등 지원 방안이  
 되겠습니다. 정부 지원 방안입니다. 먼저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상파 직수신가구 등 이런 저소득  
 층에 대해서는 저렴한 가격의 월 이용료로 서비스 제공 방안을 사업자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관련해서 서비스 제공사업자 대상으로 장애인방송 실적 평가나 방송평가  
 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사업 연간 41억원 규모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비용은 유료방송 가입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고,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은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방식을 변경하거나 기재부에 예산 신청을 해서  
 예산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정부지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3월에  
 상용화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10월까지 상용화 개시(안)과 고시 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가급적 1월을 목표로 스마트 수어방송 상용서비스를  
 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국내 수어방송 제공 현황 및 상용화 추진협의체 구성  
 (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우리가 세계 최초로 이런 멋진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일반인들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장애 맞춤형으로 크게 볼 수도 있는 정말 멋진  
 기술입니다. 우리 IT 기술에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이것을 내년 상반기에 어떻게든 상용화를  
 한번 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참여사업자를 보니까 제공채널 6개 중에 지상파 2개 사업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안 되어 있는 MBC나 SBS는 아직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올해 말까지 시범서비스를 종료하고 내년부터 상용화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시범방송에 참여한  
 채널사업자는 KBS, JTBC, TV조선, YTN 여기까지만 해당되고, 내년 상용화 때 저희가 설득을  
 해서 추가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사업자가 MBC와 SBS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상파 채널 KBS2와 EBS도 2020년까지는 상용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2020년 같으면 불과 2년도 남지 않았는데 내년 시범방송에 참여해야...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내년은 상용화이고 올해 말까지가 시범방송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내년 상용화에 참여하는 것이 장애인방송 필수지정사업자 전원이 참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예, 그것은 아닙니다. 목표는 2020년까지 필수지정사업자가 참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2020년까지 하려면 모든 채널들 다 들어오고 이렇게 이 멋진 기술을 다 하려면 내년부터 시작해야만 될 텐데 아마 응답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용 문제 같은데 방송사업자가 이것을 도입할 경우에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대략 추산해 봤는데 방송채널사업자의 경우에는 1개사당 5억 7,600만원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방송 같은 경우에 방송장비는 여벌로 2세트를 갖습니다. 원래 필요한 것과 비상시 고장이 났을 때 대비한 여벌인데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생각할 때 여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모든 국민이 다 방송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일시적으로 잘못되더라도 해당 서비스 받는 3만명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용화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해서 여벌까지 갖추지 않고 한 세트만 가지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비용이 채널사업자 같은 경우 5억 7,000만원인데 3억원 정도면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플랫폼사업자의 경우에는 케이블 기준으로 해서 약 12억 8,000여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세트만 한다면 비용을 반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작년 말까지 정부 예산이 3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범방송 참여한 사업자들은 정부 예산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부담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가급적이면 방송사업자들 재정도 요즘 어렵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확대해서 최대한 지원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게 되면 장애인방송해야 하는 필수지정사업자들이 보도채널까지 다 들어올 수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하나는 수용자, 장애인들이 수신기를 달아야 하지 않습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수신기는 얼마쯤 됩니까? 개발이 아직 안 됐습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1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많이 생산되면 계속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지요. 대량 생산으로 가격이 떨어지겠지요. 장애인들이 대개 재정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신기도 달아야 하고 또 유료채널로 가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그래서 상용화추진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료 방송사업자들도 월 이용료를 일반인보다는 굉장히 싸게 하는 방안을 협의하려고 하고, 가급적 공짜로 주라고 설득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정 내 설치하는 셋톱박스는 공짜로 플랫폼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우리가 세계 최초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라도 내년부터 당장 상용화에 많이 참여하도록 예산도 확보하고 또 그렇게 사업자를 설득해 나가기 바랍니다. 시급한 것은 상용화추진협의체를 빨리 구성해야 하지요?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오늘 보고 접수해 주시는 대로 바로 출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게 하시지요.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2020년이 되면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는데 그럴 경우 수어방송 시청자

비율은 몇 퍼센트까지 됩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전체 수어 상용화 하는 분들이 9만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9만명 중 플랫폼사업자가 3개 사업자만 참여해서 3만명인데, 저희 목표대로 하면 9만명 거의 전부가 2020년까지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수신 가입자가 4,5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만약 다 전환한다면 9만명 됩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거의 100%까지 내후년이면 다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예. 원래 유료방송 서비스 제공하는 플랫폼인데 플랫폼이 다 그때는 참여하기 때문에 9만명이 전부 다 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지금 현재 정책 추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비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채널사업자 같은 경우에 두 세트 안전장치까지 갖출 때는 5억 7,000만원, 플랫폼사업자는 12억 8,000만원인데 원래 한 세트만 하면 반으로 줄고, 이것을 지금까지는 시범방송 참여한 사업자들은 전부 정부 예산으로 장비를 다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용화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자들은 아직 저희 예산 지원을 못해 줬기 때문에 아마 그 사업자들도 정부 예산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정책 차원에서 해 주어야겠네요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그래서 최대한 형평성 차원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보고 있고, 만약 그것이 안 되면 급한 대로라도 먼저 하고 나중에 지원해 주겠다는 방안을 계속 논의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이런 굉장히 의미 있는 계획이 방송통신위원회만이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계기나 내용들은 없습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스마트 수어방송 자체는 저희 방통위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복지부 차원에서 5년 롤링플랜으로 해서 「장애인방송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타 부처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예산이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한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스마트 수어방송 상용화 추진방안이 안전으로 채택되어서 복지부를 포함한 범정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총리실과 협의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부위원장님, 이미 들어가 있어서 3월 5일 총리 주재로 위원장님 참가하기로 한 회의에 내용이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그러면 그쪽에서 예산 문제 등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아직 예산 문제까지는 계획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구체적인 것은 차후 과정으로?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그때 총리님께 부탁해서 총리 지시가 있으면 훨씬 사업하기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그렇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어서 빨리 잘 정착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시청시간대에 수어 방송을 편성하고 있지 않지요?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지금은 일반인들이 화면 가린다고 싫어해서 시청률 높은 시간을 피해서 하고 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래서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어방송이 16분의 1 정도 크기로 나가지 않습니까? 화면의 크기를 마음대로 이용자들이 조정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크기를 더 작게 해서 일반 시청자들의 불만은

줄이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주시청시간대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가니까 그때 또 수어방송을 편성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그래서 장점 중에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데 수어방송이 스마트 수어 시스템이 되면 주시청 시간대에도 일반인들은 정상 화면으로 수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 수어하시는 분들은 이 셋톱박스를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크기로 확대해서 얼마든지 크게 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청률 때문에 편성을 못 하는 문제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다른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하셔서 제가 덧붙이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어 방송, 자막방송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엇비슷합니다. 아시겠지만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화면해설 방송이 필요하고, 화면해설 방송은 자막이나 수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산상의 한계로 인해서 한꺼번에 다 추진하지 못한다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어방송 당연히 좋은 취지이고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특히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의 방송 복지 차원에서는 대단히 좋은 정책입니다. 다만, 또 다른 편에서는 시각 장애를 갖고 있어서 방송서비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분들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만큼 많다는 것은 항상 정책을 검토할 때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알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추가로 본 안건과는 조금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어제 보도를 보니까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을 보러 간 청각장애인들이 수어 통역이 현장에 없어서 전혀 듣지를 못하고 어떤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 보도를 어제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차별이다” 방송을 또 봤더니 현장에서도 수어통역사가 없었지만 방송도 지상파가 주로 중계를 했는데 수어 통역을 아주 일부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상파를 상대로 장애인단체가 지금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과장님이 시청자지원팀이니까 이 업무를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방송기반국장님 일은 아닌 것 같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김정태 시청자지원팀장**

- 방송기반국 업무가 맞고 진정이 국가인권위에 접수가 됐는데 방통위도 관련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도 의견을 이번 주 말까지는 보내 주게 되어 있고, 평창올림픽 현장에서 제공되지 않은

것은 IOC 조직위와 문체부와 관련사항이 있어서 좀 더 복잡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진정을 보니까 보건복지부와 문체부도 다 대상이 됐습니다.

○ 김정태 시청자지원팀장

-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방통위는 방송사가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답변 책임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위반사항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분명히 차별을 받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저희 장애인방송 고시와 관련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들이 역사적인 장면을 제대로 느끼고 감동을 줄 수 없다면 이것은 반 토막 개최식이 되는 것입니다. 폐회식은 이런 일이 없도록 빨리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정태 시청자지원팀장

- KBS는 편성하겠다고 고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나머지 방송사가 확답이 없는 상태이고, 25일이 폐막입니다. 그 뒤에 장애인 올림픽까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사에 시청자 재단에서는 공문을 이미 보낸 상태인데 방통위 명의로 공문이 필요할지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방송기반국 업무는 아닌 또 다른 것 하나만 기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여쭙겠습니다. 사무처장님, 평창올림픽이 중계가 중복 편성이 되어서 전부 다 돈 되는 쉐빙 이런 것만 보여주고 세계적인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기는 지상파들이 중계를 하면서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보편적시청권 보장위원회 제가 위원장으로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권고했습니다. 중복편성 없이 골고루 채널 선택권을 시청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도 이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 끝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사무처 차원에서 긴급히 방송사에 워딩을 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지금 막 소집할 수 없고 사무처에서 방송사에 중복편성하지 않도록 노티스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위원님, 기반국 소관이 맞고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빨리 서두르십시오. 결국 광고수익 문제 때문에 인기 있는 종목만 집중적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분 의견 더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 수어방송은 방송의 공익성에 대단히 중요한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 시청에 소외된 사람이 없이 장애인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게 해 주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청각 장애인들에게 빨리 보급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을 국고로 하는 것도 기본적인 것이긴 한데 이런 것을 빨리 보급시키기 위해서는 국고만 너무 바라보지 말고 장애인복지재단 같은 것, 사회에 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곳에도 알려져 이런 부분에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일을 시작할 때 모금부터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가 예산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 예산부터 신청하고 개인이 복지에 기부하는 것은 완전히 소홀히 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중요한 사회적인 일을 시작할 때는 모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고방식이 다르고 전통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은 빨리 보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사회 독지가들이 이런 데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복지재단이나 특히 장애인 복지재단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보시지요.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6-2. 의결사항(비공개)**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비공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시 14분 】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보컬이사 임명에 관한 건 (2018-09-051) (비공개)**

**8.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내부 일정 등을 고려하여 3월 7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9.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8년 제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21분 폐회 】